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0
----------	-----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2일 1차 상정, 검토보고, 심사보류】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4일 2차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등
- 2) 예산조치: 협의완료
- 3)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

- 간편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9조제3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 ② (생략)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

<p>③ (생략)</p>	<p><u>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

나.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료 간편 결제 사항 신설(안 제9조3항)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보조기기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이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는 내용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방안인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안은 감면사항을 2019년12월31일까지로 한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종합 검토 의견

- 제로페이로 보조기기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로페이 사업의 홍보강화와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 한시법이 가지는 측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2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0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
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
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9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로페이 이용자 10% 감면 시 연간 2백만원 소요

※ 연간 징수액 2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주 윤 극 (02-2133-7362)